#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44

발의연월일: 2024. 7. 29.

발 의 자:황운하·조 국·김준형

이해민 · 김재원 · 강경숙

김선민 · 신장식 · 정춘생

민홍철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과 공무원 등이 국민의 공개 청구에 대한 공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보 공개 청구의 실효성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보를 거짓으로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공개하는 행위 및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개대상인 것을 알면서도해당 정보를 공개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및 제30조 신설 등).

#### 법률 제 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중 "담당자(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와 관련된 업무 담당자를 포함한다)"를 "담당자(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와 관련된 업무 담당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6조의3(거짓공개 금지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공개하는 행위
  - 2. 제10조에 따라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개 대상인 것을 알면서 정 보를 공개 거부하는 행위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6조의3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공개한 사람
  - 2. 제6조의3제2호를 위반하여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개대상인 것을

알면서 정보를 공개 거부한 사람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6조의2(정보공개 담당자의 의 제6조의2(정보공개 담당자의 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담당 무) -----담당 자(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와 자(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와 관련된 업무 담당자를 포함한 관련된 업무 담당자를 포함한 다)는 정보공개 업무를 성실하 다. 이하 같다)-----게 수행하여야 하며, 공개 여부 의 자의적인 결정, 고의적인 처 리 지연 또는 위법한 공개 거 부 및 회피 등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6조의3(거짓공개 금지 등) 공공 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는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 다. 1.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공개하는 행위 2. 제10조에 따라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개 대상인 것을 알 면서 정보를 공개 거부하는 행위

#### <신 설>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의3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공개한 사람
2. 제6조의3제2호를 위반하여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개대상 인 것을 알면서 정보를 공개 거부한 사람